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치유 관련 사업화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493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해양치유 관련 사업화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4년 6월 14일 이병진위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해양치유 관련 사업화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술, 자금, 창업 컨설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의2(창업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해양치유란 이 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의미함.¹⁾

해양수산부는 2021년 현행법 시행 이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여 해양치유자원 활용 및 서비스 제공의 기반 마련을 통한 해양치유산업의 육성과 해양치유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고,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전남 완도, 충남 태안 등 4곳의 지방자치단체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데, 최근 휴식·휴양 목적의 바다 방문객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해양치유·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²⁾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치유 연구개발(R&D)을 통해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 기술 개발, 해양치유 시설·장비·서비스의 품질 관리 및 인증체계 구축 기술개발, ICT·IoT·VR 기술 활용 해양치유 상용화 기술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첨부1 참고) 해당 연구개발의 성과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제공된다면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기대수명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건강 관련 산업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등에 따라 해양치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치유 관련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 12. 15.),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바닷가 방문 목적이 “심신안정 및 휴식”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해양관광정책 방향으로 “휴양공간 조성”을 강조하였음.

□ 다만, 안 제26조의2제1항 관련 지원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선정 방식이나 고려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안 제26조의2제2항은 어업경영체³⁾에 대한 우대조항에 해당하는데,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를 파악한 이후 우대조항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는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하려는 자로서 대체로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 휴양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해당 조항은 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18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① 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개발 연구

- (사업목적) 4개 해양치유센터의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
- (사업기간/총사업비) '21년~'24년(4년간) / 총 39.76억원(해수부)
- (사업내용)
 -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 기술 개발(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해양치유센터 운영 자원 관리 기준, 처리·가공 기술,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추진
 - ② 최적환경 모델 적용 해양치유센터 운영 시스템 개발(㈜해양기술정책연구소)
 - 해양치유센터별 특성화 전략 수립, DB 및 플랫폼 구축, 리빙랩 운영
 - ③ 해양치유 시설·장비·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인증체계 구축 기술개발(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시설·장비, 해양치유센터 제공서비스 관리 및 인증 기준·절차 마련 등
 - ④ ICT·IoT·VR 기술 활용 해양치유 상용화 기술개발(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치유 서비스 맞춤 제공, 사후 관리를 위한 웨어러블 연동 기술 개발

② 해양치유자원 효능 검증 및 활용기술 개발

- (사업목적) 해양치유자원의 효능 검증 및 활용·관리, 표준화 기술 개발 추진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22년~'26년(5년간) / 총 89.63억원
- (사업 내용)
 - ① 해양치유자원의 효능/표준화 기술개발(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치유자원의 발현 메커니즘 규명, 표준화 및 신규 해양치유자원 발굴
 - ② 해양치유자원의 생애주기 안전관리 기술개발(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치유자원의 인체·환경 안전성 기준 마련, 생애주기 관리 기술개발

* 해양수산부 제공